

인천지방법원 2024. 5. 10 선고 2023가단284984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4. 19.

판 결 선 고 2024. 5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나. 2,499,800원 및 2023. 9. 1.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8,000원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정지원

별지